사진저작물, '필연적 인용' 가능하다

출처 명기하고 원형 손상시키지 않도록

김성재 · 일지사 대표

영상시대, 책에도 사진저작물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 제231호 참조) 출판사들은 사진저작물의 이용 한계와 범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채 제작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본문과 필연성이 인정되는" 인용의 경우,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진저작물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은 저작권 문제에 새로운 논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편집자〉

우리나라도 가입한 베른조약이 부여하는 일반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지만(제7조 1항), 예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하기로 돼 있다. 다만, 이 기간은 그러한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적어도 25년의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되기로 돼 있다(제7조 4항).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일반저작물과 구별해 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이거나 단체명의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다른 종류와 마찬가지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이전의 구저작권법에서는 보호기간이 10년간(공표 후부터인지 사망 후 부터인지 명시돼 있지 않았다)이었기 때문에 1976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진저작물은 1986년까지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 저작권이 소멸돼 공유(公有, public domain)로 돌아가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사진저작물도 197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만 사후 50년간 보호해 주면 된다. 조약 등으로 보호의 의무가 있는 외국인의 사진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이 우리보다 긴 나라의 것은 내국민 대우를 하므로 1977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것만 사후 50년간 보호하면 되고, 우리보다 짧은 나라의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의 보호기간만큼 짧게 보호하면 된다.

사진저작물이란?

사진저작물(photographic works)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예술적 영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서 개성이 나타나야만 한다. 그런데 그림이나 글씨와 같은 평면적인 예술 작품을 충실히 그대로 촬영해 그것들의 단순한 기계적 재현(再現)에 그친 것이라든가 증명용 사진 같은 것은 기술적인 교졸(巧拙) 말고는 아무런 개성이나 창의가 보이지 않으므로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물이 아닌 이러한 것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반해 풍경이나 조각과 같은 입체적인 피사체를 촬영한 사진은 대체로 카메라 앵글이나 조명에 의한 빛의 음영(陰影) 선택 등 외에도 모델의 배치, 색채의 조화, 적절한 촬영 기회 등에 창작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저작물이다. 사진저작물에는 사진 외에 사진과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도 포함된다(저작권법 제4조 1항 6호).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 프랑스 등과는 달리 독일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아닌 사진도 사진저작물과 동일한 권리를 인접권으로서 부여하며(독일저작권법 제72조),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나라에서는 특별법으로써 사진저작물을 보호한다. ❖

사진저작물의 자유 이용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제22조~제30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로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중 저술이나 출판과 관계가 깊은 것은 제25조의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예를 들어, 비평서나 연구서 또는 교재에서 본문의 해당되는 곳에 관련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의 복제사진 따위를 삽입하는 것은 본문과는 필연성이 인정되는 동시에 주종(主從)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용에 해당하므로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지도나 도표 등의 저작물 인용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주체가 되는 저작물 내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사진저작물을 컷으로서 삽입하거나 표지화 또는 재킷화(jacket) 따위로 사용하는 것은 인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인용'할 때는 출처 명시해야

사진저작물을 인용으로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제34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이지만 인용에 사용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명은 물론 표제(인용 저작물의 제명)를 표시하는 것만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밖에도 제작 또는 공표 연도, 크기, 재료(회화의 사진인 경우), 색채(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는지 컬러로 돼 있는지) 등도 엄밀히 표시하는 게 학문적 양심으로나 도의적으로도 필요하다.

또한 사진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인용되는 저작물의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자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의 동일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트리밍(trimming)해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농도를 낮추거나 특수한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그리고 결합사진 또는 몽타주(montage) 등 합성사진을 만들거나 꼴라주(collage)에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한 이유와 방법을 밝혀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저작물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서적출판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은 당연히 보호받게 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된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베른조약, 세계저작권조약, WTO협정)에 따라 보호된다(제3조 1항). 그리고 그림이나 글씨 따위 평면적인 작품의 사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물성(著作物性)이 없으므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저작권이 소멸한 작품에 대한 사진촬영 등에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저작권사용료로서가 아니라 원작품 소유권의 사용료로서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진으로 공표됐다면 서적을 출판하는 데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이 살아 있는 입체적인 작품을 촬영한 사진저작물은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권자의 허락만 얻으면 되는 것이다.

76년 이전 사망자의 작품은 이용 가능

다음으로는 그 사진저작물이 보호기간 안에 있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1976년 이전에 죽은 저작자의 것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보호기간이 우리보다 짧은 나라의 것은 상대국의 보호기간만큼 보호하면 된다. 곧 폴란드와 같이 사후 25년만 보호하는 나라의 것은 그만큼만 보호하면 된다.

보호기간내의 저작물일지라도 인용하기 위해 쓰일 때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학술서 등에서는 사진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따위)의 인용빈도가 높으므로 그것이 이 인용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위의 여러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득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그와 교섭하기란 여간 귀찮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많은 권리자로부터 사진저작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진저작권 관리단체도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이런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책갈피 산책

의자에 묻혀 살았던 인간의 역사

갤런 크렌츠의 《의자》를 읽고

채승진 · 한국기술교육대 산업디자인공학과 교수

현대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인공물이 의자라면 다들 의외라 생각할 것이다. 우주왕복선, 수퍼 컴퓨터 아니면 최소한 자동차쯤은 돼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기계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어디엔가 엉덩이를 붙여야 한다. 먹고 일하고 여행하고 쉬기 위해 자세를 고정시키고 몸을 부려 놓는 곳이 의자다.

오늘날 우리는 의자에 몸을 바싹 붙이고 앉아 일을 지시하고 작업능률과 육체의 피로를 통제한다. 의식적으로 의자에 다가가지만 일단 자리를 잡고나면 깔고앉은 의자란 놈을 잊기 일쑤다. 의자를 떠날 생각은 못하고 조금이라도 편해볼 요량으로 몸을 무의식적으로 뒤척인다.

이렇게 의자에 몸을 맞춘 현대 인류가, 등뼈가 휘고 힘줄이 늘어나고 근육이 압박받아 볼품없는 자세로 전락해가는 동안 전통의 위엄과 예술의 이름, 그리고 과학의 이름으로 설계된 의자들이 속속 출현했다. 산업화 이후 동양이나 서양이나 의자를 공유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거의 같은 문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나온 갤런 크렌츠의 《의자》는 인류 역사와 문명의 한가운데 놓인 의자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의자에 묻혀 사는 우리들에게 질문과 영감을 던지고 있다. 오늘날 일상화된 의자가 인간의 육체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생리적 특징과 신체적 모순을 조형적 또는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발견해나가는 과정은 일반인은 물론 의자 디자이너나 인간공학 연구가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의자는 권위와 위엄, 부의 과시수단으로 쓰였다. 의자를 통해 조직된 교육과 노동작업은 인간의 신체조건에 대부분 맞지 않다. 저자는 의자에 구속되지 말고 자기에게 편안한 자세를 자유롭게 취하라고 한다. 의식과 겉치레로 몸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내일이면 의자는 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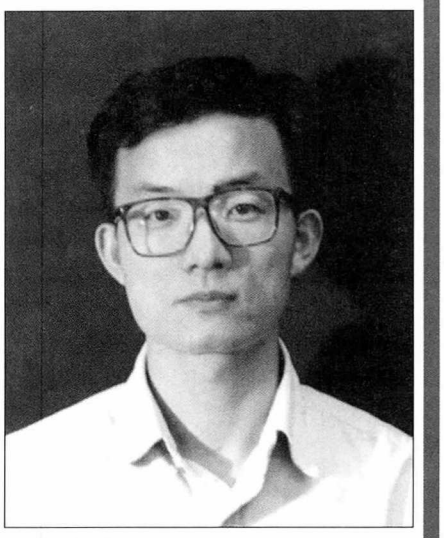

채승진 교수.

저자의 시각은 크게 의자를 통해 오늘날 일상생활의 병리학적 문제를 다룬 것, 의자를 생활공간에서 조심스럽게 배제해나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것으로 분류된다. 인류문명의 병리학적 측면에서 의자는 전통적으로 권위와 위엄, 부의 과시, 신분과 성차별 혹은 인종차별의 수단으로 쓰였다. 동서양과 미국 또는 유럽 문명권 사이에서는 의자의 도입과 겉치레로써 부가 장식의 모방을 통하여 문화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을 낳기도 했다. 산업사회 이후 등장한 대단위 작업장과 사무공간에서 의자는 노동자를 작업대와 부품이동라인과 책상머리에 질서정연하게 붙들어 두는 기능을 했고, 크기와 스타일, 마감과 가격으로 직장의 위계를 상징했다. 그리고 의자는 공교육 제도의 주요한 도구가 되어 어린이들의 반듯한 수업자세와 예절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자를 통하여 조직된 교육과 작업과 일상생활은 인간의 신체조건에 대부분 맞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체적 퇴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고대 조각상이나 아프리카 원주민의 건장한 자세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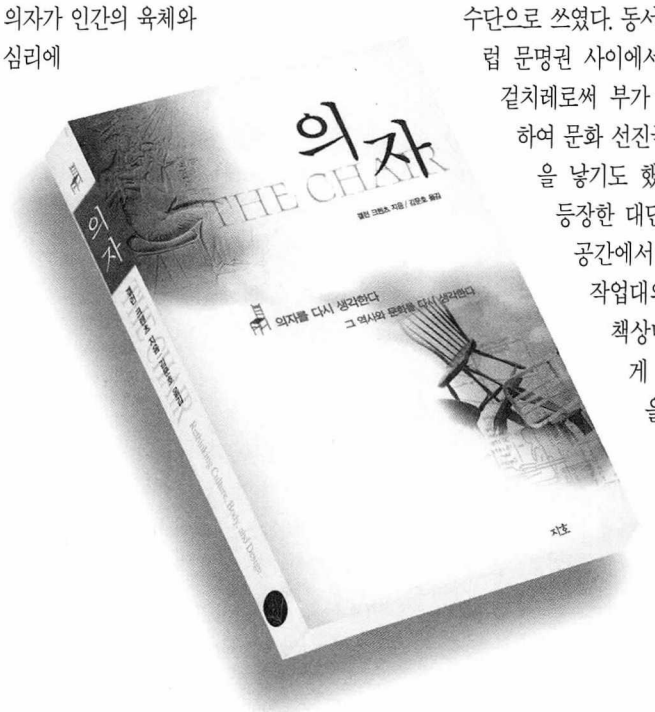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도 불편함과 생리적 퇴행을 무릅쓰고 구입한 의자에 몸을 맞추려 노력할 것인가? 저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크렌츠는 생활공간과 작업장에서 과감히 의자를 없앤 다음 바닥에 앉거나 마루에 둔덕을 두거나 바닥을 파거나 온돌을 도입하여 의자에 구속되지 말고 자기에게 편안한 온갖 자세를 자유롭게 취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도 의자가 필요하다면 좀더 인간공학적인 모델을 채택할 것을 당부한다. 예로든 것이 1980년대 노르웨이에서 개발된 밸런스의자 같은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인식과 분위기다. 우리는 푹 파묻히거나 엄격한 등받이를 내세운 기존 의자에 너무 익숙해 있다. 최근 통계를 볼 때, 궁극적으로 미래의 사람들은 의식과 겉치레로 신체를 망치는 일을 계속하진 않을 것이라 한다. '내일이면 사라질 의자'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

지호/A5신/336면/12,000원